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5.

발 의 자 : 윤종오 · 전종덕 · 정혜경
손 솔 · 정춘생 · 임미애
김종민 · 김준형 · 용혜인
한창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835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